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2가단5156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진영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담당변호사 김종현

변론 종결2024. 6. 20.

판결 선고2024.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15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9.부터 2024. 8.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 대위행사에 따른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1,15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C와 D 사이의 2021. 2. 1.자 의류제품 대물변제합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150,8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부터 2021. 3.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의류부자재 등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128,069,2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05653호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22.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8,069,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인정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21. 2. 1. D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합의서 작성에 따라 소외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라고 한다).

2. 채권채무내용

소외 회사는 2018. 4. 30. 5억 원을 D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며 차용증서 약정에 의거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수금에 문제가 발생, 지속적인 약속이행이 불가능하여, 소외 회사는 D에게 현금 대신 생산 중인 3억 원 상당의 의류제품으로 대물변제하고 정산 후 잔금은 2021년 9월말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한다.

3. 합의사항

소외 회사는 D에게 5억 원을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거래처(주식회사 E)와 납품계약을 맺어 생산중인 약 3억 원 상당의 의류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으로 대물변제하고 정산 후 잔금은 2021. 9. 30.까지 현금으로 변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소외 회사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거래관계가 없는 E로부터 소외 회사가 E로부터 받았어야 할 물품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소외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하거나 소외 회사가 외국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의류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선택적으로 ① 법인격 남용에 따른 직접청구, ② 소외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자대위권행사, ③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자대위권행사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권리를 이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전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판단의 편의상 주위적 청구로서 선택적 청구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주장을 살펴본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2) 보전의 필요성 앞서 본 증거에 갑 제6 내지 8, 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 2021. 4. 23.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E, 청구채권을 의류원단 물품대금채권 184,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E과 체결한 2020. 12.자 의류공급계약에 의거 E로부터 피고 명의로 지급받는 의류대금채권 184,000,000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118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F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8695호로 물품대금채권 184,126,5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변제한 날이 2021. 3. 25.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1 차용증에 따른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변제액을 얼마로 볼지는 불명확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액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외 회사가 위 2021. 3. 25. 이후로 피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서, 대위청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합계 350,032,155원, 피고가 소외 회사에 기 지급한 금액은 164,829,245원, 지급하지 않은 잔존 물품대금이 185,202,91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을 제9, 11호증, 2024. 7. 15.자 참고서면).

피고가 2024. 5. 31.자 준비서면에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의 그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저지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2024. 6. 12. 기준 피보전채권의 범위¹⁾ 내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인 171,15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로서 선택적 청구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을 인정하였고, 다른 선택적 청구는 위 인용액 이상으로 인용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주위적 청구로서 다른 선택적 청구들과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물품대금 청구권 대위행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경세

1) 지연손해금 43,081,653원[= 128,069,242원 × {2+294/366(= 2021. 8. 24.부터 2024. 6. 12.까지)} × 연 12%, 원 미만 버림], 원리금 171,150,895원(= 128,069,242원 + 43,081,653원)